消防法 改正에 대한 考察

李　承　九

（中央消防研究所 代表）

지난 3월20일 立法会議를 통과하여 4월4일 法律第3413號로 公布 施行하게된 消防法中 改正内容은 建築物의 完工에 대하여 完工検査畢証으로 소방서에 대한 동의를 생략하며 高層建物 등 특수 장소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 하는 등 過度하게 규제 되었던 사항을 완화하는 한편 消防施設의 基準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여 現行法上 민폐의 소지가 보여지는 조항을 완화함으로써 国民의 負担을 덜어 주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이하 改正 消防法 全文 ——

消防法中改正法律案

法律第3413號(81. 4. 4)

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 題目 "「(市長・郡守의 責任과 監督)」"을 "「(市・郡의 책임 등)」"으로 한다.

第5條第1項중 "「火災의 予防」"을 "「화재의 예방 또는 鎮圧対策」"으로 하고 同條第2項第2号를 삭제하며, 同條 第6項중 "「火災予防上」"을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로 한다.

第6條를 삭제한다.

第9條1項중「用途変更의 許可・認可」"를「용도변경의 허가(建築法 第8條 및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을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로 "「그 許可・認可 또는 확인에 있어서」"를 "「그 허가 또는 확인에 있어서」"로 "「허가・인가 또는 확인을 할수 없다」"를 "「許可또는 확인을 할수 없다」"로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에 대한 同意에 있어서는 第32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消防施設의 完工検査畢証을 交付함으로써 동의에 갈음한다. 이 경우 市長 또는 郡守는 完工検査畢証을 確認하여야 한다.

第11條1項중「15미터」를「31미터」로「防火管理上 필요한 業務를」을「방화관리상 필요한 事項을」로 한다.

第12條1項中「高層建築物」을「고층건축물(共同住宅을 제외한다)」로 하고「学校・共同住宅・工場・市場・百貨店・・図書館・地下街 또는」을 삭제하며, 同條 同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다만 스프링크라設備・물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沫消火設備로서 自動式인 消火設備가 설치된 消防対象物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第1項 但書중「10日이내의」를「60日 이내의」로 한다.

第16條1項중「基準(이하 "施設基準"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를「기준(이하 이 章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内務部令으로 정한다"로」하고 同條第3項중「設置基準」을「施設基準」으로 한다.

第18條第1項 本文중「資格証所持者」를「資格取得者」로 하고 同條同項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危険販売取扱所 또는 指定数量의 10배 未満의 危険物貯蔵所와 煖房을 目的으로 設置한 貯蔵所 (호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강습을 修了한 者를 危険物取扱者로 選任할 수 있다.」

第18條2項중「危険物取扱主任은」을「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는」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危険物取扱主任을」을「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를」로「危険物取扱主任의」를「危険物取扱主任 또는 危険物取扱者의」로 하며 同條第4項중「資格証所持者」를「資格取得者」로 하고 同條第5項중「위험물취급주임을」을「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를」로 한다.

第20條의 題目및 第1項 내지 第3項중「予防規定」을 각각「予防規程」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第16條」를「第16條第1項」으로 하며, 同條第1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다만,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특수장소에 設置된 製造所등의 予防規定은 第10條第2項 第1号의 消防計画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第27條第1項중「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를「内務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第29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第29條의 2(消防施設基準적용의 特例) 第29條第1項의 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大統領令 또는 内務部令의 変更으로 그 基準이 強化된 경우에는 기존 특수장소(建築物의 新築・増築・改築・移築・大修繕등의 工事중인 特殊場所를 포함한다)의 消防施設(消火器具・警報設備 및 避難設備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第30條第1項 및 第2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중「第2項」을「第1項」으로 한다.

① 第16條第1項 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業 또는 整備業(이하 "消防設備業"이라 한다.

② 第16條第1項 및 第29條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는 国家技術 資格法에 의한 消防設備技士 (消防設備技術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責任下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1條중「消防設備技士가 행할수 있는」을「소방설비 기사의 責任下에 하여야 할」로 하며 第3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2條 (消防施設의 施工申告등) ① 第16條第1項 및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시설의 種類 施工場所 기타 필요한 事項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完了한 者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完工検査를 받아야 한다.

③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検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第38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9項 및 第10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2項의 檢定의 基準이 될 消防用 機械, 器具 등의 形狀·構造·材質·成分·性能·檢定合格表示 기타 필요한 事項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⑨ 내무부장관은 關係者 등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消防用機械·器具 등에 대한 性能試驗을 할 수 있다.

⑩ 第9項의 성능시험에 관하여는 제2項第5項 및 第40條第2項·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9條 第3號 중「檢定」을「검정 또는 性能試驗」으로 한다.

第10章「罰則」을「第12章 罰則」으로 하고 第70條의 8 앞에「第11章 補則」을 挿入하며「第9章의 2補則」을「第10章 韓國消防安全協會」로 한다.

第70條의 4 第1號 중「申告의 義務가 있는 消防關係業者」를「신고의무가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고, 同條 第1項 第2號 및 同條 第2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防火官理者·危險物取扱主任·危險物施設安全員 또는消防設備技士로 選任 또는 雇傭된 날로부터 會員이 된다.

第70條의 8을 第70條의 9로 하고, 第70條의 8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0條의8 (任職員의 公務員身分 擬制) 第70條의3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官廳이 委託한 업무에 종사하는 協會의 任員 및 직원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條70條의9 (종전의 第70條의8) 第1項 중「內務部長官」을「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으로,「防火管理者, 消防設備技士·危險物取扱主任 및 危險物施設安全員」을「防火官理者·위험물취급주임·위험물취급자·危險物施設安全員 및 消防設備技士」로 하고, 同條「第2項」을「第3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對象者가 所定의 教育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選任 또는 雇傭한 者에 대하여 防火管理者·危險物取扱主任·危險物取扱者·危險物施設安全員의 解任을 命하거나 消防設備技士의 解雇를 勸告할 수 있다.

第70條의10 및 第70條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0條의10 (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內務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道知事·市長(서울特別市長과 釜山市長을 제외한다)·郡守 또는 消防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70條의 11 (施行令) 이 法·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2條 내지 第78條의 題目 "(同前)"을 "(罰則)"으로 한다.

條74第 중「10萬원 이하의 罰金에」를「100萬원 이하의 罰金에」로 한다.

第75條 중「6月 이하의 懲役 또는 5萬원 이하의 罰金에」를「50萬원 이하의 罰金에」로 한다.

第76條 중「3月 이하의 懲役 또는 3萬원 이하의 罰金에」를「30萬원 이하의 罰金에」로 하고 同條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火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 또는 第1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取扱者를 選任하지 아니하고 事業을 행한 者.

第77條 중「2萬원 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10萬원 이하의 罰金에」로 하고 同條에 第11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1. 第70條의9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任 命令에 違反한 者.

第78條 중「第3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怠慢히 한 者는 1萬원 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過怠料에」를「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怠慢히 하거나 第3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檢查를 받지·아니한 者는 5萬원 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에」로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改正內容対比表

—변경내용부분
□ 삭제 및 신설부분

題 目	舊 法	新 法	內 容
消防行政責任 消防対象物의 檢查	第3條(市長·郡守의 責任과 監督) ①～③ (省略) 第5條(消防対象物의 檢查) ① 消防本部長 또는消防署長은 火災의 矛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関係者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関係地域에 出入하여 消防氏象物의 位置, 構造·設備 또는 管理의 狀況을 檢查하게 하거나관계자에게 질문하게할 수 있다. 다만 個人의 住居에 있어서	第3條(市·郡의 責任등) ①③ (現行과 같음) 第5條(消防対象物의 檢查) ①……………………… …火災의 矛防 또는 鎭圧 対策……………………… ……………………… ……………………… ……………………… ……………………… ……………………… ……………………… ……………………… ………………………	실제 消防業務에 대한 不合理点시정 ①소방대상물의 조사를 하는 목적이 화재의 예방에서 진압 대책까지로 강화됨.

題目	舊法	新法	內容
	는 관계자의 承諾이 있거나 火災発生의 우려가 顯著 하여 緊急을 要할때에 限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検査는 다음 各号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関係者의 承諾없이 日出前 또는 日没後에 이를 行할 수 있다. 1. (省略) 2. 山林을 検査할 때 3. (생략) ③ - ⑤ (생략) ⑥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火災矛防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消防対象物과 期日 또는 期間을 指定하여 그 管轄区域안의 義勇消防隊員으로 하여금 関係地域안에 出入 하여 第1項의 検査 및 質問을 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項 但書및 第2項내지 第 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 ································ ································ ②······························ ································ ································ ································ 1. (現行과 같음) 2. (削除) 3. (현행과 같음) ③ - ⑤(현 행과 같음) ⑥······························ ···火災의 矛防 또는 鎮圧 対策을 위하여 ················ ································ ································ ································ ································ ································ ································ ································ ································	② 현 실정으로 보아 山林을 検査한다는 것은 実現 不可能함으로 소방검사는 建築物에 한함 ⑥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책임의 확대
消防検査에 대한 特例	第6條(消防検査에 대한 特例 ①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険加入에 관한 法律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韓国火災保険協会에서 実施하는 安全点検은 第5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検査로 볼 수 있다. ② 第1項의 消防検査로 갈음할 수 있는 安全点検의 범위 기타 필요한 事項은 内務部令으로 정한다.	(削除) ································ ································ ································ ································ ································ ································ ································ ································ ································ ································	① 韓国火災保険協会에서 실시하는 安全点検은 성격상 과다한 지적사항이 발견되며 이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기존 建築物의 소유주는 빈번한 공사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됨으로 취소됨.
建築許可등의 同意	第9條(建築許可등의 同意) ① 建築物의 新築·増築·改築·移転·大修繕 및 構造 또는 用途變更의 許可·認可 또는 확인의 権限을 가진 行政庁 또는 그委任을 받은者는 그 허가·인가 또는 確認에 있어서 미리 당해 建築物의 工事施工地 또는 所在地를 管轄하는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許可·認可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다. ② - ③ (省略) (新設)	第9條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 허가(建築法 第8條 및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규정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을 포함한다(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확인의······그 허가 또는 확인에 있어서 미 ································ ································ ···허가 또는 확인을········· ································ ② - ③(現行과 같음) ④ 第1項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대한 同意에 있어서는 第3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完工検査畢	④ 建築竣工同意로 처리하던 것을 消防施設의 完工検査필증을 交付함으로 행정의 간소화 및 기일 단축

題目	舊法	新法	內容
		證을 交付함으로써 同意에 갈음한다. 이 경우 市長 또는 郡守는 完工檢査畢證을 확인하여야 한다.	
共同防火管理	第11條(共同防火管理) ① 高層建築物(높이 15미터를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하다. 이하 같다).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消防対象物로서 그 管理의 権原이 分離되어 있는 것 또는 地下街(地下의 工作物안에 設置된 店舗事務室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로서 連續하여 地下道에 面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로서 그管理의 権原이 分離된 것 중에서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이 指定하는 것에 対한 管理이 権原이 있는 者는 第10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消防計劃의 作成 기타 防火管理上 필요한業務를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議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省略)	第11條(共同防火管理) ① … ①……………………31미터 …………………… …………………… …………………… …………………… …………………… …………………… …………………… …………………… …………………… …………………… …………………… …………………… …………………… …………………… …………………… …………………… …………事項을………… …………………… …………………… …………………… ② (現行과 같음)	① 高層建築物의 규정을 15M에서 31M로 변경됨으로 共同防火管理에 책임이 있는 建築物의 個所가 감소됨.
特殊場所의 防炎	第12條(特殊場所의 防炎) ① 高層建築物 學校·共同住宅 工場·市場·百貨店·図書館·地下街 또는 劇場·카바레·호텔·病院등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消防対象物에서 사용하는 카텐·실내장식물·전시용 合板 기타 이와 類似한 物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은 防災性能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新設) ② (省略)	第12條(특수장소의 防炎) ① 고층건축물(共同住宅을제외한다) 劇場·카바레·호텔·病院등…………… …………………… …………………… …………………… …………………… …………………… …………………… …………………… …………………… 다만, 스프링크라設備·물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沫消火設備로써 自動式인 소화설비가 設置된 消防対—物에서 사용하는 作品은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現行과 같음)	① 아파트·학교·공장·시장·백화점 도서관·지하가·높이 31m 이하 건물등의 8種이 除外됨으로 서울의 경우 약97% 감소됨 ② 自動式 消火設備가 設置된 建築物은 免除됨
危險物의 貯藏 및 取扱	第14條(危險物의 貯藏 및 取扱)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数量(이하 "指定数量"이라한다) 이상의 危險物은 위험물의 貯藏所(車輛에 固定된 탱크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第14條(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 …………………… …………………… …………………… …………………… ……………………	

題目	舊法	新法	內容
	이를 저장하거나 危險物의 製造所·저장소 또는 取扱所(이하 "製造所等"이라한다)에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만다, 消防本部長또는 消防署長의 承認을 받아 指定數量 以上의 危險物을 10日 이내의 期間내에 臨時로 저장 또는 取扱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省略)	…………………… …………………… …………………… …………………… …………………… …………………… …………………… ……… 60일 이내의 ……… …………………… ②③ (現行과 같음)	①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을 10일 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함
製造所등의 시설기준	第16條(製造所등의 施設基準) ① 製造所등의 位置·構造 및 設備(消防施設을 포함한다)의 基準(이하"施設基準"이라한다)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第1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의 煖房用 危險物貯藏所의 위치·구조 및 設備의 基準은 市·郡條例로 정한다. ③ 製造所등의 위치·구조 및 設備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에 적합하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第16條(제조소등의 시설기준) ①…………………… …………………… 기준(이하 이 章에서 "시설기준"이라한다)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 …………………… …………………… …………………… …………………… ② (現行과 같음) ③…………………… …………………… …………………… …………施設基準…………	① 제조소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내무부령으로 변경
危險物取扱主任	第18條(危險物取扱主任) ① 製造所등의 設置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當該危險物取扱에 관한 資格證所持者를 위험물 취급주임으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危險物 販買所와 第15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住宅의 난방용 위험물 저장소 및 指定數量의 10倍未滿의 위험물을 煖房用으로 使用하기 위한 危險物 貯藏所(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場所에 設置된위험물 저장소는 제외한다)에 設置된 위험물 저장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危險物取扱主任은 內務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危險物取扱에 관한 保安·監督을 하여야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危險物取扱主任을 選任한 製造所 등에 있어 서는 危險物取扱主任의 参與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위험물취급주임) ① …………………… …………資格取得者……… …………………… ……………………다만, 危險物 판매취급소 또는 指定數量의 10倍미만의 危險物貯藏所와 煖房을 目的으로 설치한 저장소 또는 取扱所(호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內務部令이 정하는 講習을修了한 者를 危險物 取扱者로 選任할 수 있다. …………………… ②…………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는 …………………… …………………… …………………… ③…………………… 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를 ……… 危險物取扱主任 또는 危險物取扱者의…………… …………………… …………………… ……………………	① 위험물 취급 주임의 자격이 "자격증 소지자"에서 소정의 강습을 수료한 "자격 취득자"로 완화됨.

題目	舊法	新法	內容
	……………………………… ……………………………… ④ 第1項의 資格證所持者가 危險物取扱에 관하여 保安監督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種類는 그 資格 区分에 따라 內務部令으로정한다.	④……………資格取得者가 ……………………………… ……………………………… ……………………………… ……………………………… ……………………………… ……………………………… ………………………………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危險物取扱主任을 選任 또는 解任한 때에는 7日이내에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를……………… ……………………………… ……………………………… ………………………………	
予防規定	第20條(予防規定)① 大統領이 定하는 製造所등의 関係者는 그 製造所등의 火災를 予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予防規定을 정하고許可庁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20條(予防規程) ① ……… ……………………………… ……………………………… ……………………………… ……予防規程……………… ……………………………… ………………………………	① 예방규정을 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던 사항을 消防計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新設)	다만, 第10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特殊場所에 設置된 製造所등의 予防規程은 第10條 第2項 第1号의 消防計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許可庁은 第1項의 予防規定이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認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予防規程이 第16條 第1項……… ……………………………… ……………………………… ……………………………… ………………………………	
	③ 許可庁은 火災予防上필요할 때에는 予防規定의變更을 命할 수 있다.	③……………………………… ………………予防規程의 ………………………………	
手数料	第27條(手数料) 製造所 등의 設置許可 또는 그 位置·構造·設備의 變更許可와 完工検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数料를 納付 하여야 한다.	第27條(手数料) …………… ……………………………… ……………………………… ……………………………… ……………………………… 內務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定→程 허가시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무부령으로 통일함.
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第29條(特殊場所등의 消防施設) ① 特殊場所의 関係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火設備·警報設備·避難設備·消火用水設備 기타 消火活動上 필요한 設備 (이하 "消防施設"이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設置하고 維持하여야 한다.	第29條(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①……………………… ……………………………… ……………………………… ……………………………… ……………………………… ………內務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	① 소방시설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내무부령으로 변경
	② (생략)	② (現行과 같음)	

題目	舊法	新法	內容
소방시설기준적용의 특례	(新設)	第29條의 2 (消防施設基準적용의 特例) ① 第29條 第1項의 消防施設의 基準에 관한 大統領令 또는 內務部令의 變更으로 그 기준이 強化된 경우에는 기존 特殊場所(建築物의 新築·增築·改築·移転·大修善 등의 工事중인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의 消防施設(消火器具·警報設備 및 避難設備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消防法改正時 遡及적용으로 因한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 소급의 원칙을 규정함
消防施設의 施工	第30條(消防施設의 施工) ① 国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消防設備技士資格證所持者(技術士資格證所持者를 包含한다. 이와 같다)가 아니면 第16條 第1項 및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방시설의 工事 또는 整備를 할 수 없다. ②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業(이하 "消防設備業"이라 한다)을 営為하고자 하는 者는 道知事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設備業의 登録施設基準·登録取消 기타 監督에 관한 事項과 手数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内務部令으로 定한다	第30條(소방실설의 시공) ① 第16條 第1項 및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業 또는 整備業(이하 "消防設備業"이라 한다)을 営為하고자 하는 者는 道知事에게 登録하였야 한다……………… ……………………………… ② 第16條 第1項 및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정비는 国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消防設備技士(消防設備技術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責任下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項…………………… ……………………………… ……………………………… ……………………………… ……………………………… ………………………………	소방시설의 시공은 소방설비기사가 직접하던 것을 소방설비기사 책임하에 할 수 있게규정을 변경함.
消防設備技士	第31條(消防設備技士) 消防設備技士가 행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工事 또는 整備의 種類는 그 資格 区分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1條(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의 責任下에 하여야 할 …………………… ……………………………… ……………………………… ………………………………	문구 수정
施工申告	第32條(施工申告) 消防設備業者는 第16條 第1項 및 第29條 第1項의 규정에의 한 消防施設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施工하기 10日前까지 内務部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消防施設의 種類·施工	第32條(消防施設의 施工申告 등) ① 第16條 第1項 및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의 한 소방서설의 工事 또는, 整備를 하고자 하는 者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	소방시설의 工事를 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준공시에는 신축의 경우 소방서장 또는 본부장의 동의를 얻은것을 준공검사로 대체하며 기존 건물의 경우 구법에는 준공 사항이 누락되었었음. 이번 法개정에는 준공검사및 준공검사 필증 교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

題目	舊法	新法	內容
	場所 기타 필요한 事項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新設) (新設)	……………………………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完了한 者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完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第2項의 規定에의한 完工檢査結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적합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完工檢査畢證을 交付하여야한다	음.
消防用 기계 기구등의 검정	第38條(消防用機械器具 등의 檢定) ①−② (省略) ③ 第2項의 檢定의 基準이 될 消防用 機械·器具 등의 성분·재료·구조·규격·성능 기타 필요한事項과 檢定合格表示는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④~⑧(省略) (新設) (新設)	第38條(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 ①−② (現行과같음) ③…………………………… 形狀·構造·材質·成分·性能 검정합격표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 ④ ~ ⑥ (現行과 같음) ⑨ 내무부장관은 關係者등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消防用 機械·器具등에 대한 性能試驗을 할 수 있다. ⑩ 第9項의 性能試驗에關하여는 第2項, 第3項 및 第40條 第2項·第3項의 規定을 準用 한다.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검사를 소방검사시 정밀검사하던것을 검정공사에서 성능 시험.
手数料	第39條(手数料) 다음 各号의 경우에는 內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納付하여야 한다. 1. 2 (省略) 3.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消防用 機械·器具 등의 檢定을 받고자 할 때	第39條(수수료)……………… …………………………… …………………………… …………………………… 1. 2 (現行과 같음) 3. …………………… …………………………… 검정 또는 性能試驗을……	성능시험 신청때의 수수료 규정 항목을 신설함.
会員의 자격	第70條의4 (会員의 資格) ① 協会의 회원은 다음 各号의 者로 한다. 1.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録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消防関係業者 2. 危險物取扱主任·위험물시설안전원·消防設備技士·防火管理者로서 会員이 되고자 하는 者 ③ (省略) ② 第1項 第1号에 해당	第70條의4 …(회원자격) ① …………………………… …………………………… 1. …………………… …………………………… …申告義務가 있는 者로서 大統領이 정하는 자. 2. 防火管理者·위험물취급주임·危險物施設安全員 또는 소방설비기사로 選任되거나 雇傭된 者 3. (現行과 같음) ② 第1項第1号 및 第2号	한국 소방안전협회 회원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任意会員이 当然 会員의 자격이 됨.

題目	舊法	新法	內容
	하는者는 許可를 받거나, 등록 또는 申告된 날로 부터 会員이 된다. ③ (省設)	에 해당하는 者는 허가·登録 또는 신고되거나 選任 또는 雇傭된 날로 부터 회원이 된다. ③ (現行과 같음)	
任職員의 공무원 신분	(新設)	第70條의 8 (任·職員의 公務員身分 擬制) 第70條의 3 第4号의 규정에 의하여 行政官庁이 委託한 업무에 종사하는 協会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教育	第70條의 8 (防火管理者 등에 대한 교육) ① 内務部長官은 火災予防과 安全管理의 効率化를 기하고 새로운技術의 普及 또는 消防関係人의 教養涵養을 위하여 방화관리자·소방설비기사·危険物取扱主任 및 危険物施設安全員에 대하여 年1回 7日의 범위안에서 教育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第70條의 9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教育) ①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防火管理 者 ·위험물취급주임·危険物取扱者·위험물시설안전원및 消防設備技士에 대하여 ………………………………………………	①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책임이 내무부장관에서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위임됨.
	② (新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第1項의 規定에의한 教育対象者가 所定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雇傭한 者에 대하여 防火管理者·위험물취급주임·危険物取扱者 또는 危検物施設安全員의 解任을 命하거나 消防設備技士의 解雇를 勧告할 수 있다.	②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확립
	③ (省略)	③ (現行 ②와 같음)	
	(新設)	第70條의 10 (權限의 委任)이 法에 의한 内務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道知事·市長·(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제외한다) 郡守 또는 消防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新設)	第70條의11 (施行令)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罰 則	第72條 (同 前)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1. 2. (생략) 3.	(罰 則)	이하 72조~78조까지 벌금의 증액 (10배)

題目	舊法	新法	內容
	第73條(同　前) (이하 생략)	(罰　則)	
	第74條(同　前)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생 략)	100만원	
	第75條(同　前)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5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생략)	(罰　則) 50만원	
	第76條(同　前) 다음 各号의1에 해당하는 者는 3月 이하의 懲役 또는 3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2. 생략 3.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防火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이하 추가 4. 생략	(罰　則) 30만원 －의한－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위험물 취급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자	
	第77條(同　前)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萬원 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1. ～10. 생략 11. 신설	(罰　則) 11. 第70條의9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違反한 者	
	第78條(同　前) 第10條 第3項 第15條 第3項・第18條 第5項 또는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怠慢히 한 者는 1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過料에 處한다.	(罰 則)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怠慢히 하거나 第32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完工検査를 받지 아니한 者는 5萬원 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로 한다.	

発刊

전국 각시도 건축관계예규집
건축관계 법령추록//7월중//

본회는 전국회원의 업무편의를 돕기 위해 전국 각시도 건축관계 예규집과 이미 발간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집 추록을 오는 7월중에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